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적용방안 연구

2019. 12. 20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출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김숙연



목차

- I 서론
- Ⅲ 사회적경제와 ODA사업의 관련성

Ⅲ 사회적경제 활용을 통한 ODA 활성화 방안

IV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 적용방안

01 서론

- ODA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ODA사업 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성이 있음
- 보고서(Seed, 2016; British Council, 2017; Hanley et al.,2017)에 의하면 수원국들에 대한 원조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음
 - 수원국 정치적 불안, 국민들이 주인의식 결여, 자립 의지 미약, 부패와 거버넌스 미약, 일부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 안전 위험, 자연재해의 취약성 등
- 수원국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자연재해 등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나, 수원국의 부패문제, 환경문제를 감안한 ODA 프로젝트 이행 등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이 될 수 있음

"수원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새로운 행위자(as a new a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01 서론

- ODA사업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가능성과 방법론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제한적으로나마 사회적기업들이 국제 개발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The Guardian지는 11개의 교훈이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1)국제개발활동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규모는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 2)사회적기업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은 분야에서 발견된다
 - 3)사회적기업들의 활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한다
 - 4)기술개발이나 고용 창출형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 5)사회적기업들은 빈곤층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 6)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의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 7)사회적기업도 비용과 수익에 대한 보고 등에서 일반기업처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8)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 9)NGO같은 세계적 수준의 자선단체들은 사회적기업이 창업되어 활동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 10)기존의 NGO들은 사회적기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줄여 줄 수 있다
 - 11)자선단체들이 장래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제개발과정에서 사회적기업들과 관련된 교훈으로 제시된 내용은, 향후 국제개발과정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 관련 연구

- Wanyama(2015) 협동조합이 국제 개발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지에 관해 논의
- Buzinde et al.(2016)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국제개발 관점에서 지속가능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분석
- Sheldon, Dredge & Daniele(2017)

 저개발 국가들의 관광산업과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전
- Ramani et al(2017)

 상수도와 위생관리를 위한 인도에서의 국제개발사업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연구
- 기타 Rhadari et al.(2016), Edward & Tallontire(2009), Seelos et al. (2006), Seelos & Mair(2005), Azman(2013), Galvin & Iannotti(2014)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 사업을 SDGs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역할

"사회적기업이 국제개발, 즉 ODA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사례연구

우리나라에서도 ODA 주요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황과 국제개발 관련 시사점

● 에티오피아(Ethiop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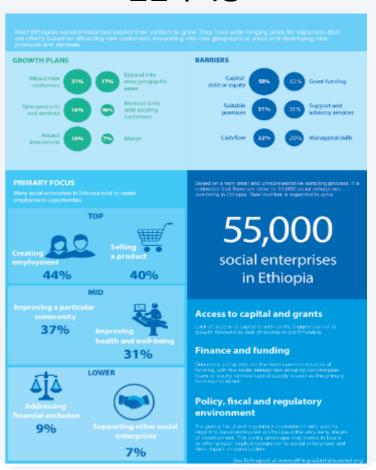
• 저개발국가이지만, 2019년 10월에 The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2019를 개최할 정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국가

〈표2-1〉에티오피아의 개괄적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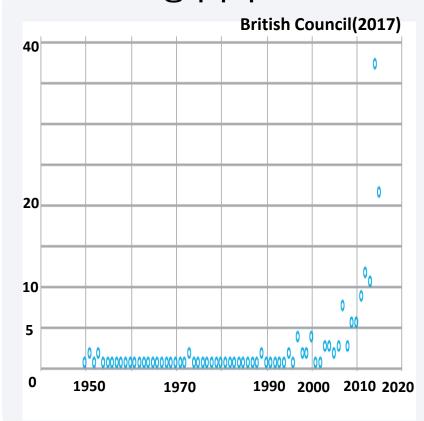
Population (millions)	99,3 (2015)
Labour force (millions)	47 (2014)
Main economic sectors (% GDP)	Agriculture, Service and Manufacturing
Majayaitiaa	Addis Ababa, Bahir Dar, Mekelle, Hawassa
Major cities	and Adama
GDP annual growth rate (USD, constnat), %	9.936(2014)
GDP total (USD)	61.537 billion (2015)
British Council(2017)	



〈그림2-1〉에티오피아의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성



<그림2-2> 에티오피아의 사회적기업 수 증가 추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2-2〉에티오피아의 사회적기업의 목표

Objective	Number of responses	Respon ses (%)	Responde nts (%)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59	17	44
Selling a good or a product	53	15	40
Supporting vulnerable people	30	9	22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42	12	31
Protecting the environment	28	8	21
Promoting education and literacy	20	6	15
Improving a particular community	50	14	37
Supporting vulnerable children and young people	21	6	16
Supporting other social enterprises/organisations	10	3	7
Addressing social exclusion	24	7	18
Addressing financial exclusion	12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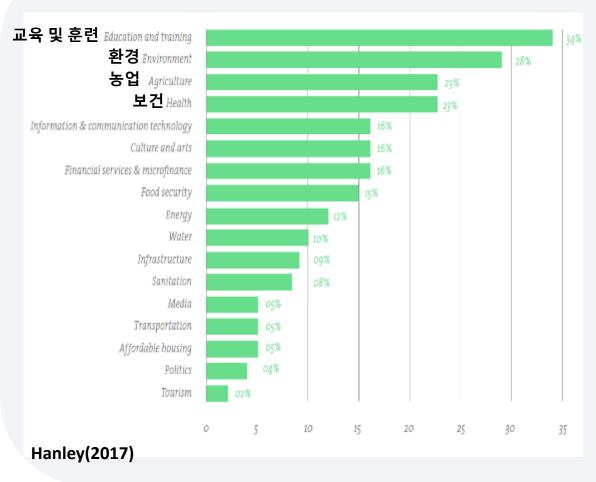
■ 고용기회창출, 제품판매,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삶의 질 향상 등 ODA사업 목표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결과를 보임

〈표2-3〉에티오피아의 사회적기업의 활동 분야

Sector	Number of respondents	responde nts (%)
Services (e.g. ICT, tourism)	18	14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including to Charities and NGOs)	16	12
Agriculture and fisheries	15	11
Other	15	11
Retail	14	11
Manufacturing	10	8
Food and Nutrition	9	7
Education	7	5
Financial services	7	5
Health and social care	6	5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5	4
Mobility and transport	4	3
Livelihoods and employment creation	3	2

■ 서비스분야,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 및 기업적 지원, 농업 및 어업 등의 순으로 활동 분야가 구성되어 있음

〈그림2-3〉 4개 국가들의 사회적기업 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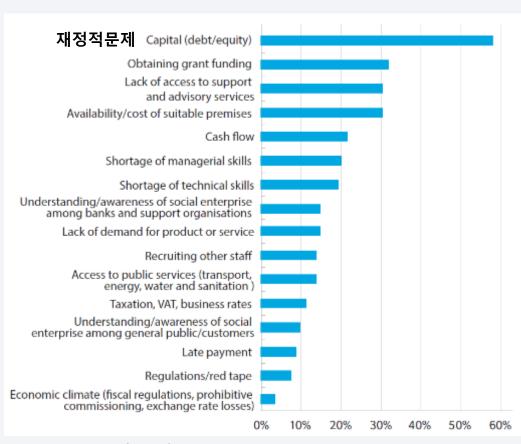


- 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케냐 및 남아프리카
- ●<그림2-3>에서와 같이, 4개 국가들의 사회적기업 활동 분야는 교육 및 훈련, 환경, 농업 및 보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사회적기업들도 ODA사업과 업무 영역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원국의 사회적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활용한다면 ODA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림2-4〉 사회적기업들의 애로사항



●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의 순으로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적 문제로, ODA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British Council(2017)

사회적경제 활용을 통한 ODA 활성화 방안

□ 원조공여국의 사회적경제 활용 방안

- 원조공여국의 측면에서는 ODA사업 수행 단계-집행 및 평가단계에서 사 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수행 단계)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수원국 현지에서 ODA사업 직접 수행 가능
- (집행 및 평가 단계) ODA사업 수행 후 평가과정에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평가에도 직접 참여 가능
- 이를 위해서 공여국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선결조건임

〈표3-1〉 국가별 사회적기업가정신 점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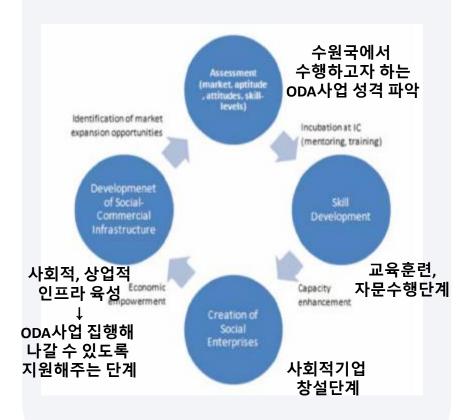
Country	Score	Rank
United States	65.9	1
Canada	65.3	2
UK	60.6	3
Singapore	59.9	4
Israel	59.4	5
Chile	59.2	6
South Korea	58.9	7
Hong Kong	58.5	8
Malaysia	58.3	9
France	58.0	10
Switzerland	56.4	11
Germany	55.9	12
Italy	55.9	12
Colombia	55.4	14
India	55.4	14
_		_

Thomson Reuters Foundation(2017)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순임
-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7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ODA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 가능

사회적경제 활용을 통한 ODA 활성화 방안

<그림3-1> ODA추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구상 과정



Seed(2016)

□ 수원국의 사회적경제 활용 방안

- 수원국 측면에서는 현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ODA추진에 있어 수원국들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 을 창설하여 ODA사업 추진에 활용 할 필요성이 있음
- 수원국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원조 공여국들이 해결해 나가
 야 할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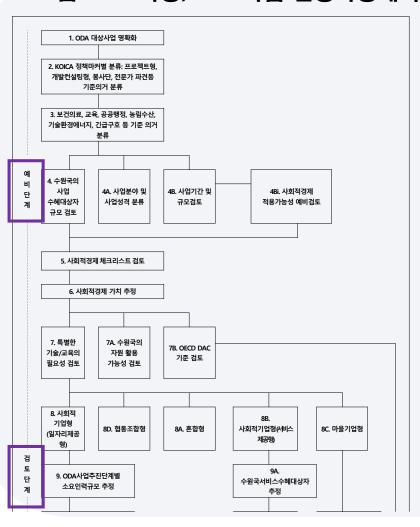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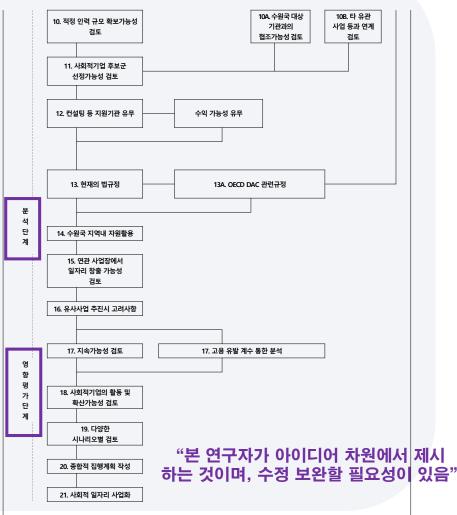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 적용방안

-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육성과 관심이 많은 편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 여건도 좋은 편임
- 하지만 ODA사업의 집행이나 평가과정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며, 대부분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같은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ODA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 "가칭)사회적경제영역 사전 평가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 가칭)사회적경제영역 사전 평가제도 〈그림4-1〉
 - 개별 ODA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개별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특정 ODA사업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시행해보고자 하는 것
 - 특정 ODA사업을 구상하는 담당자가 해당사업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제도임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 적용방안

<그림4-1> 가칭)ODA사업 결정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 사전평가제도 절차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 적용방안

- 가칭)사회적경제영역 사전 평가 제도는 예비 단계, 검토 단계, 분석 단계, 영향 평가 단계로 구성되며, 사전 평가제도를 거치게 되면 많은 사업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ODA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임
- 가칭)사회적경제영역 사전 평가제도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행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또한 KOICA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정 규모의 사업이나 특정 사업 성격을 정해놓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집행이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음
 - 교육이나 컨설팅, 또는 평가관련 분야에서 시범사업의 실시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THANK YOU FOR LISTENING